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33호

김포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김포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19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직위

임용예정 직위	직 급	인 원	임용기간	주요업무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1명	2년	《감사관 업무 총괄》 ○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직기강 확립(공직자 징계 등)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사항 ○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관련 사항 ○ 고충민원, 청원, 진정사항 조사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 ○ 그 밖에 감사 및 조사관련 사항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기(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4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격요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아래요건 중 <u>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u>**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대통령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5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 임용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한 능력요건*에 대한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2. 01.(화) ~ 12. 07.(월)

○ 접 수 처 : 김포시청 총무과 인재성장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신분증 지참)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 김포시청 민원동 1층(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직급별 수입증지 발급

※ 개방형(5호) : 1만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 서류 안내(기준일 : 원서 접수일 현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②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주소 :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총무과 인재성장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김포시 감사관(개방형직위)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체 사본**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skwjjr@korea.kr)로 송부해야 함
- 응시표는 이메일 회신 예정

★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서류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담당자 유선 연락(☎031-980-2324)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1.(화) ~ 12. 7.(월)	2026. 12. 9.(수) 전·후	2026. 12. 11.(금) 전·후	2026. 12월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공고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민원여권과에 수수료 납부 후 인재성장팀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 동봉 **※ 우편 통상환증서구입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 시간 유의**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6.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필수
9. 경력(재직)증명서	○ **담당업무, 근무기간(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지자체 임기제 경력증명 발급 시, 직위란에 근무분야 내용 (예 : 도서관사서 업무, 여권발급 업무) 포함 발급** ○ 재직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국세청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10. 기타 증빙서류	○ 추가필수자격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제출
※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가급적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권고	

8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 하한액(53,316천원)으로 책정이 원칙이며,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 가능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기타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경력 ·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재성장팀(☎031-980-2324)